

우체국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우체국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“(정리계좌에의 편입)”을 제20조“(거래중지계좌에의 편입)”으로 하고 제1항 중 “정리계좌”를 “거래중지계좌”로 한다. 제1항제2호 중 “잔고가 5만원 미만으로서”를 “잔고가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서”로 하며,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

3. 잔고가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으로서 3년이상 계속하여 거래가 없을 때 제2항 중 “정리계좌”를 “거래중지계좌”로 하고 “매년 11월 마지막 일요일에”를 “연 2회(5월, 11월 마지막 일요일)에”로 하며 제3항은 삭제한다.

제21조(“정리계좌”~)를 (“거래중지계좌”~)로 하고 본문 중 “정리계좌”를 “거래중지계좌”로 한다.

제37조 본문을 제37조제1항으로 하고 그 중 “및 예정사망률”을 “·예정사망률 및 최적기초율”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의 최적기초율이란 장래 현금흐름이 실제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최대한 근접하도록 추정된 기초율(최적사업비율, 최적위험률, 최적해지율 등)을 말한다.

제48조제2항 중 “보험료의 2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”를 “재무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”로 한다.

제49조제2항 중 “보험료의 2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”를 “재무건

전성을 해치지 않도록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범위내에서”로 한다.

제53조제1항 후단의 “보험금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”를 “보험금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와 그밖에 제43조제9호에 따라 보험약관으로 정하는 보험종류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”로 한다.

제53조제1항제3호 “입학 또는 입학 예정자로 확정된 경우 : 해당 학교장이 발생한 입학증명서 또는 그 밖에 입학 예정자임을 증명하는 서류”를 “질병 또는 재해 진단의 경우 :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